

창 간 사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는 우리나라 공증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공증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된 공증인법 체계를 일원화 시키고,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대한공증협회를 강제단체로 만들며, 선서인증·전자공증과 같은 선진 공증제도가 새로 도입하게 되어 있어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실로 반세기만에 우리나라 공증제도는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증제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증 실정은 공증의 이론과 실무양면에서 연구가 너무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증제도가 생긴 것은 조선시대 법전인 이전(吏典)의 매매한조(賣買限條)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대적인 공증제도는 1913년 '조선공증령'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특히 현행 공증인법은 1961년 제정되어 그 후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정 당시 10여 명에 불과하던 공증인 수는 현재 2,000여명에 이르고, 그 처리건수도 연 22여 만 건에서 연 400여 만 건으로 급증하는 등 놀라운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증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질적 성장은 거의 정체되어 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률학의 한 분야로 "공증법학"이 연구되어 오면서 일본공증인연합회나 공증법학회, 법학 교수 등이 공증 관련 서적과 논문을 꾸준히 출간·발표하고 있고, 또 선진 외국 공증제도를 연구하여 일본의 법문화와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받아들여 공증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하겠

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부동산등기원인증서와 합의이혼제도에 대한 인증, 특정물 동산인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일부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그 토대는 아직 도 미약합니다.

현재 우리 공증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편리와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공증직역 확장을 포함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공증문화의 형성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법정책과 문화, 사회환경, IT기술 등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증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도 다양해지고, 세계화 물결의 흐름에 따라 법률시장도 곧 개방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공증제도나 공증법학의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다듬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 「대한공증협회지」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대한공증협회지」가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발전과 공증법학 연구, 이론개발의 구심점이 되고, 나아가 예방사법인 공증제도를 꽃 피우게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낙후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선진 제도를 조사·연구하여 공증의 대국민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이바지하였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공증협회지」의 발간은 공증연구 책자 발간에 있어 첫 걸음마를 하는 아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점에서 부족하지만 두 걸음, 세 걸음으로 이어나가면서 그 입지가 굳건해 질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공증협회지」는 열린공간이자 참여공간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법조계, 법학계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

대한공증협회 협회장 조희중

조희중